

노동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1호 pp.29-58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프리랜서들의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장종익**

본 논문은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목적 및 지속가능 조건을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프리랜서들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이 사회적 후생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호성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에서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을 설립한 프리랜서들이 전업적 프리랜서들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조기은퇴자 등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프리랜서, 협동조합, 경제적 지속가능성, 일의 조직화 방식

논문접수일: 2018년 9월 4일, 심사의뢰일: 2018년 9월 20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0일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2016S1A5A8019791).

**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및 사회혁신경영대학원 부교수(jijang5@hs.ac.kr)

I. 머리말 : 문제 제기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와는 다른 직업적 지위를 갖는 프리랜서의 규모가 최근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학원 강사, 작가, 기자 및 출판 전문가, 화가, 공연예술가, 디자이너,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자 등 전통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문화해설가,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사회복지 및 개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컨설팅 및 상담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프리랜서 직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이승렬 외, 2013; 전병유 외, 2017; 장지연 외, 2017; 권현지 외, 2017).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프리랜서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 및 온디맨드(on-demand) 경제의 확대와 기업의 아웃소싱 혹은 유연성 제고 전략의 확산 등으로 프리랜서 직업유형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조기은퇴자나 경력 단절여성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결과(Kitching and Smallbone, 2008; 황준욱 외, 2009; 이승렬 외, 2013)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은 자가고용이라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같지만 누구를 고용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다르며 주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소득을 올린다는 점에서 임금노동자와 같지만 특정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하에 여러 고객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르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의 조직화 과정에서 프리랜서가 직면한 애로요인과 해결방식은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와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임금노동이나 자영업 혹은 소상공인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프리랜서에 관한 연구는 아직은 초보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프리랜서에 관한 기존 연구는 프리랜서 직업이 등장하게 된 경제적 배경(Rainbird, 1991; Kunda 외, 2002; Kitching and

Smallbone, 2008)이나 프리랜서들의 직업적 애로요인, 개별적 성공요인 및 사회보험의 확대방안 등(Dex et al., 2000; 황준욱 외, 2009; Van den Born et al., 2013; 이승렬 외, 2013)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프리랜서들이 일을 조직화함에 있어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협동조합을 분석한다. 프리랜서들은 특정한 고용주와 장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임금노동자와 다르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들이 노동의 제공 및 보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노동조합 방식을 채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프리랜서의 특징 중 자영업자적 특징을 공유하는 소농민들은 오래전부터 협동조합 형태를 통하여 독과점시장에서 거래협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일을 조직화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규모 경영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성공하였다(Sexton et al., 1992; Hansmann, 1996; 장종익, 2010). 가족농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전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농업/농민 문제의 적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연구결과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Bijman et al., 2012; Cook, 2012).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농민협동조합처럼 프리랜서들이 자신이 직면한 과제를 협동조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사회적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적지 않은 수의 협동조합들이 프리랜서들이 설립하였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프리랜서들이 일의 조직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결성하였고, 협동조합을 통하여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리랜서의 협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자(직원)협동조합이나 전통적인 사업자의 협동조합과 어떻게 다르며, 지속적 발전을 위한 조건이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究明)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에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중 추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설립 주체의 경제적 배경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을 추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데이터, 과학기술인협동조합에 대한 두 차례의 서베이 데이터,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샘플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업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귀납적 접근 방법에 의하여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공식적인(informal) 수준의 가설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다음 절에서 프리랜서의 개념과 일자리로서의 프리랜서 직업의 특징 및 애로요인을 검토한다.

II. 프리랜서 직업의 특징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등장

1. 프리랜서 직업의 특징과 애로요인

미국에서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나 ‘비정형 노동자(contingent worker)’, 독일에서는 ‘자유직업인(freie berufler)’, 프랑스에서는 ‘독립노동자(independent labour)’라는 용어로 불리어지는 프리랜서는 나라마다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나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나 전통적인 자영업자와는 다른 직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리랜서의 구체적인 특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프리랜서의 정의를 채택하고자 한다. Kitching과 Smallbone(2012: 76)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일을 단독 혹은 파트너와 함께 수행하고 그 일의 결과와 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타인을 고용하지 않는 직업상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프리랜서 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취업자 유형으로 파악하는 나라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선진국의 많은 나라에서 전통적인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프리랜서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독립계약자 또는 프리랜서, 파견용역노동자(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호출노

동자(on-call workers), 계약노동자 등을 비정형 노동자(contingent workers)로 범주화하고 이를 2005년도부터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비정형 노동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10.1%(1,420만 명)에서 2015년에 15.8%(2,360만 명)로 증가하였다(Katz and Krueger, 2016). 반면에 자영업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7.5%에서 6.5%로 감소하였다.¹⁾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 비정형 노동자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서 이 분야와 비즈니스서비스 및 전문직종이 전체 비정형 노동자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Katz and Krueger, 2016).

영국에서 프리랜서의 수는 1992년에 100만 명 수준에서 2011년에 15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Kitching and Smallbone, 2012). 특히 교육, 케어서비스, 미디어와 예술, 전문직종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경력단절여성과 유사한 워킹맘, 청년, 고령자 등이 고루 프리랜서 형태의 직업에 활발하게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Jenkins, 2017). 독일에서도 프리랜서는 2012년에 433만 9천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0.5%로 나타나고 있다(이승렬 외, 2013).

한국에서는 2012년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54만 5천 명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26만 5천 명 중에서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추산하면 약 65만 6천 명이 프리랜서 직업형태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2.6%에 해당한다(이승렬 외, 2013). 전병유 외(2017)도 한국노동패널을 통하여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14년 현재 약 6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한국노동패널 표본이 취업자 기준 5천여 명에 불과한 점과 프리랜서의 표본 수가 212명 정도밖에 조사되지 않아서 표본오차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전통적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뿐만 아니라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 직업형태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장지연 외, 2017). 또한 프리랜서협동조합에서 파악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프리랜서들 중에서 최근에 경력단절여성이나 조기은퇴자 등의 일시적 프리랜서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리랜서들의 유형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한국노동패널

1) 경제협력개발기구 홈페이지(<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표본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프리랜서 직업형태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직업군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독립성이 강한 프리랜서, 즉 ‘자유로운 에이전시 모델(free agency model)’(Kunda et al., 2002) 혹은 ‘포트폴리오 모델(portfolio model)’(Fraser and Gold, 2001; Smeaton, 2003)과 임노동자적 종속성이 강한 프리랜서, 즉 ‘한계형 모델(marginalization model)’(Smeaton, 2003)로 구분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독립성이 강한 프리랜서는 수행하는 일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결과 중심적인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특정 일감 제공기업/조직에 종속성이 강한 프리랜서는 수행하는 일이 일반적이고 프로젝트의 다단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투입요소 중심의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황준욱 외, 2009; Muehlbrger, 2007). 임노동자적 종속성이 강한 프리랜서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 등 전통적인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와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장지연 외, 2017).

이러한 프리랜서 유형에 따라 프리랜서의 직업상의 애로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직업상의 애로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Jang, 2017). 첫째, 프로젝트의 수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애로요인이다. 프리랜서들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기능 및 숙련도와 별도의 지식, 정보, 협상력, 네트워킹 등의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네트워크 구축을 둘러싼 프리랜서 개인 간 경쟁은 사회적으로 낭비될 수 있다. 둘째, 수주되거나 수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과 프리랜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의 양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변동성 문제이다. 이 문제는 프리랜서들이 고립 분산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셋째, 프리랜서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일을 수행하며, 프로젝트의 완성 후 대금결제 과정에서 큰 조직규모의 클라이언트에 비하여 낮은 협상력 및 정보력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부당한 대우나 간섭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²⁾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프리랜서들은 임금노동자와는

2) 서울시가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내 프리랜서 1천 명에 대한 「프리랜서 거래 및

달리 사회보장의 혜택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전병유 외, 2017). 실업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가 주로 고용주와 임금노동자의 특성에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프리랜서의 사회보장제도 적용 문제는 적지 않은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김기선, 2016; 전병유 외, 2017; 장지연 외, 2017).

2.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등장

프리랜서들과 관련된 경제적 조직은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이는 oDesk, elance, Field Nation, People Hour, Fiverr 등 프리랜스 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윤추구형 기업이 오래전부터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랜서(elancer), 위시켓(wishket), 프리모아(freemoa) 등 프리랜스 일의 플랫폼 제공기업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그 자체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프리랜서들의 애로요인, 즉 일감 수주의 변동성 문제와 계약상의 불리한 협상력 문제, 사회보험문제 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프리랜서들의 의료보험문제 등 복지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설립된 Freelancer Union과 같은 비영리조직이나 동종업계 프리랜서들의 협회 등 권익옹호 단체가 설립되어 왔으며,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이나 비영리기업들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Conaty 외, 2018).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프리랜서들의 자조적 경제조직인 협동조합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등장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 후인 2017년 11월 말까지 총 1만 2,349개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³⁾ 필자의 추정에 따르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낮은 보수와 단기계약 업무방식으로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구두계약, 불리한 계약,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기획재정부의 2016년 말 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운영되는 5,100개의 협동조

면, 이러한 신설 협동조합 중에서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은 약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그리고 설립된 협동조합의 약 44%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가들이 조합원 사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고, 지역공동체 증진을 위하여 마을 리더나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일반협동조합이 전체의 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2%가 사회적협동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서울시와 경기도 데이터의 유형 재분류 결과⁵⁾

유형	기준	서울 조합수	경기 조합수	소계
소상공인·소기업가 협동조합	조합원이 주로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 이면서 조합의 주된 설립 목적이 조합원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조합원 수입 증가, 조합원 고용안정 등이라고 답변한 협동조합	190 (40.0)	159 (50.3)	349 (43.8)
프리랜서 협동조합	조합원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조합원이면서 조합의 주된 설립 목적이 조합원 수입증가, 조합원 고용안정, 사업체 경쟁력 강화라고 응답한 협동조합	129 (26.9)	57 (18.0)	186 (23.4)
직원 협동조합	조합원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조합원이면서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는 협동조합	9 (1.9)	5 (1.6)	14 (1.8)
지역공동체 증진형 협동조합	조합원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조합원이면서 조합의 설립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조합원 복지 증진, 사회혁신이나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환경보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이라고 응답한 협동조합	96 (20.0)	58 (18.4)	154 (19.3)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기준	56 (11.7)	37 (11.7)	93 (11.7)
전 체		480 (100.0)	316 (100.0)	796 (100.0)

자료 : 기획재정부(2015),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원자료」.

합의 조합원 수는 31.3만 명이고, 총 자본금액은 2,343억 원에 이르고 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결과 발표).

- 4) 이 추정치는 기획재정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말 기준으로 운영되는 설립협동조합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이터 중 서울시와 경기도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결과이다(장종익, 2017).
- 5) 2016년 말 기획재정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제3차 협동조합 설문조사는 2014년 말 설문조사의 설문지 항목과 동일하지 않고 조합원의 특성에 관한 설문항목이 폐기되어 2014년 말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한 것처럼 유형 재분류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러한 추정치는 필자가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103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60개 협동조합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 설문조사에서 “과학기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일감을 공동으로 수주한 후 조합과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일을 수행하고 자신들의 보수를 가져가는 방식의 프리랜서형 협동조합”이 11개로 18%를 차지하였다(장종익 외, 2015). 이는 “연구개발·기술거래·IT서비스 등 동일한 기능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조합원으로 모여 공동마케팅 혹은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사업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의 서비스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이(異)기능·이업종 등에 종사하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조합원으로 모인 융·복합형 사업자 협동조합” 38개(6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었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중은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78개 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베이에서는 30%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사업자협동조합은 54%로 감소하였다(장종익 외, 2017).

〈표 2〉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일부 목록

업종	협동조합명
교육서비스업	한국강사협동조합, 과학자협동조합 보쌈, 한국숲해설가협동조합, 체험학습교사협동조합, 한국소셜미디어강사협동조합, 문화예술강사협동조합짱돌이티, 팽택방과후교사협동조합, 시민정원사협동조합, 전국직업상담사협동조합, 한국아이티개발자협동조합, 한국컨설팅트 석박사협동조합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문경문화예술협동조합, 담양공예명인협동조합, 충남문화콘텐츠협동조합, 공연예술협동조합나무, 대한문화가요지도사 협동조합, 젊은문화기획협동조합, 한국시각예술인협동조합, 벽화문화창작소협동조합, 대학로연극농장협동조합, 대한민국여행작가협동조합, 협동조합 문화체육강사협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경남영상협동조합, 한국사진기자협동조합, 광주스마트콘텐츠개발자협동조합, 길위의스토리텔링협동조합, 한국영상제작스텝협동조합, 한국MICE협동조합, 강원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 한국스냅작가협동조합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동조합, 태성엔지니어링컨설팅 협동조합,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조은건축사 협동조합, 한국여성건설엔지니어 협동조합, 당진지역건축사협동조합, 한국과학기술인협동조합, 한국전문번역사협동조합, 제주바이오생산자협동조합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그리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2>는 이러한 영역에서 설립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일부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프리랜서협동조합의 개념과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과의 차이점

이렇게 등장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이 사회적 후생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호성(mutuality)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에서 지속가능해야 한다.⁶⁾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최근에 등장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필요조건은 보통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로 요약된다(Hansmann, 1996; Nillson, 1999; 장종익, 2014).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다른 소유구조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과 공통의 조직운영원칙을 지니고 있지만 개별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협동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과 효율적인 조직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즈니스모델과 효율적인 조직운영모델은 크게 소비자협동조합, 농민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협동조합섹터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성공사례를 분석한 기존 문헌에 따르면,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성공한 특징의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이 빠르게 복제되어가면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이

6) 협동조합은 상호성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익성(public interest)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는데,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의 이론적·실천적 오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장종익(2018)을 참조할 것.

확산되어가는 경로를 밟아왔다(Birchall, 2011; Zamagni, 2012; Jang, 2014). 최근에 설립되기 시작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은 아직 복제 가능할 정도로 성공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을 시행착오를 통하여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의 첫 단계는 기존 유형의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과 농민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이 서로 다르고 노동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도 두 유형의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조합원들의 공통의 필요와 사회경제적 애로요인상의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기 시작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프리랜서가 사업자라는 점에서 농민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농민이나 소상공인과 다르기 때문에 농민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소기업가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주된 목적은 독과점 횡포 혹은 경쟁 심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사업체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에 협동조합은 조합원 사업체에 대한 마케팅 지원기능이나 각종 백오피스(back office) 기능을 담당한다. 반면에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프리랜서들이 종사하는 시장에서의 불공정성에 대처하거나 프리랜서들의 일감 수주의 불안정성과 직업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조합원의 프로젝트 수주 및 이행 관련 지원기능을 담당한다.

즉,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프리랜서의 프로젝트 수주 및 이행과 관련된 백오피스 기능을 담당하는 점에서 사업자협동조합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통적 자영업자나 소기업가의 사업체 운영과 프리랜서의 용역 제공은 서로 차이가 있어서 소기업가의 협동조합 사업과 프리랜서의 협동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사업자협동조합이나 프리랜서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가 조합원의 비즈니스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반면에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고용계약을 통하여 하나의 법인격으로 통일되어 있다. 만약 프리랜서들이 하나의 협동조합기업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게 되는 비전을 갖고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이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이 아닌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의 혼합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ang, 2017). <표 3>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직원)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교

	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직원)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목적	독과점 횡포 혹은 경쟁 심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사업체 비즈니스 지원	- 이윤추구기업에서의 고용 불안정 및 자의적 경영에 대응하여 조합원의 질 좋은 고용 창출과 안정 - 기업 민주주의 실현	일감 수주의 불안정성과 직업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조합원의 프로젝트 수주 및 이행 관련 지원
조합원의 경제적 특징	사업체의 운영자	피고용자	독립적 노동자
일과 관련된 조합원과의 계약의 성격	상업 계약	고용 계약	상업 계약(서비스 계약)
사업의 특징	조합원 사업장과의 밸류체인 통합	협동노동의 장점을 발휘하는 사업의 영위	- 프로젝트 공동 수주 및 이행 집중 - 협동노동

자료: Jang(2017)을 보완한 것임.

Ⅲ.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실태 분석

1.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설립주체의 유형별 설립 목적

앞 장에서 검토한 프리랜서협동조합에 관한 개념을 토대로 서울시에 소재한 프리랜서협동조합 39곳의 이사장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 전화조사 및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웹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 중 프리랜서형 협동조합으로 추정하여 추출한 230개 협동조합 중에서 연락이 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인 61개 협동조합 중에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이라고 응답한 39개 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을 완료하였다. 필자가 설문 응답자에게 제시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들이 함께 프로젝트 혹은 일감을 수주하여 조합과 서비스 계약을 통해 역할분담을 하고 자신들의 보수를 가져가는 방식의 프리랜서형 협동조합.”

39개 조합이 종사하는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39개 조합의 조합원 수는 평균 25명이고, 가장 많은 조합원 수를 보유한 협동조합은 160명이며, 가장 적은 조합원 수를 보유한 협동조합은 5명이다. 2013년에 설립된 조합이 13개, 2014년에 설립된 조합이 13개, 2015년에 설립된 조합이 12개이며, 32개 조합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응답 중에서 자발적인 전문 프리랜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경력단절여성이나 은퇴자, 마을활동가 혹은 마을주민도 37.3%를 차지였다(표 4 참조). 경력단절여성과 은퇴자, 마을활동가 혹은 마을주민들은 자발적인 전문프리랜서와 달리 풀타임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프리랜서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때, 이러한 프리랜서조합원의 전업성 여

〈표 4〉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중복 답변 포함)

	조합(개)
① 자발적인 전문 프리랜서(정규직 일자리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자유 직업인을 선호함)	26
② 비자발적인 프리랜서(정규직 일자리가 제공되면 취업할 의향이 강함)	5
③ 경력단절여성	9
④ 은퇴자	9
⑤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	3
⑥ 마을활동가 혹은 마을주민	7
⑦ 기타	5
무응답	3
전 체	67

부와 자발적 선택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안정성과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기대와 열망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비자발적으로 프리랜서에 내몰리게 된 사람들은 임노동자로서의 고용기회가 제공되면 조합원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전업적 프리랜서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협동조합과 부업적 프리랜서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기대 수준과 조합원의 조직운영방식 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업적 프리랜서의 경우 일감의 안정적 확보와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 대금결제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목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과 관련된 사회보험제도 수혜의 안정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전업적 프리랜서가 설립한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측면의 과제와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보험 해결 과제가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반면에 부업적 프리랜서들은 연금이나 퇴직금, 기타 수입 등으로 생활비의 대부분을 해결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은퇴자들이나 보육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부업적 프리랜서들은 혼자 일할 때보다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함으로써 일을 통한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재능을 적재적소에 기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거나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의 형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부업적 프리랜서들의 사회보험 해결에 대한 요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양코르브라보협동조합 등 프로보노형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들의 조직 목표 및 비즈니스모델은 참우리건축협동조합 등 전업적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조직 목표 및 비즈니스모델과 서로 다를 수 있다(우미숙과 장종익, 2018).

다음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종사하는 시장에서의 불공정성 여부를 물었는데,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조합 12.8%에 비하여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조합은 53.8%로 시장에서의 불공정성 여부는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을 결정한 지배적인 요

〈표 5〉 조합원이 종사하는 시장의 불공정성(일감 수주, 보상구조, 대금지불 측면)에 대한 인식

	조합(개)	비율(%)
①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다	21	53.84
② 어느 정도 있다고 느낀다	8	20.51
③ 보통이다	5	12.82
④ 심각한 편이라고 느낀다	4	10.25
⑤ 매우 심각하다고 느낀다	1	2.56
⑥ 무응답	0	0
전 체	39	100

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조사에서 확인되었다(표 5 참조). 이는 서울시가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계약 및 보수 지급 지연을 경험한 프리랜서의 비율이 1,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약 25% 내외를 차지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서울시, 2018).

그렇다면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을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프리랜서들이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즉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공모 제안서 작성 등에서의 어려움, 계약서의 작성·공모 절차 및 이행, 납품 및 대금지출 등에서 단체나 기업에 비하여 공신력(신뢰)이 낮아서 겪는 어려움, 그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일감 수주의 불안정성 및 변동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추론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9개 프리랜서협동조합 중에서 조합의 장기적 목표를 조합원들이 필요한 일감의 전부를 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프리랜서들의 일감 수주의 불안정성 및 지나친 변동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설정한 조합이 72%를 차지하였고, 반면에 업계에 대한 정보 교환 정도의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조합은 28%에 불과하였다(표 6 참조). 이처럼 조합원들이 설정한 조합의 장기 목표는 프리랜서협동조합 사이에 큰 차이가 관찰된다. 현재 대부분의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조합의 장기 목표를 이러한 현실 수준에 만족하는 경우와 조합원들의 일감의 전부를 조합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

〈표 6〉 조합원들이 설정한 조합의 장기적 목표

(단위: 개, %)

	조합	비율
① 조합의 비즈니스 전문성을 높이고, 조합의 규모를 확대하여 프리랜서인 조합원들이 필요한 일감 전부를 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프리랜서들의 일감 수주의 불안정성 및 지나친 변동성을 해소하는 것	28	71.79
② 협동조합은 프리랜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일감 수주의 한 곳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생각이 비슷한 조합원들 간의 업계 정보 교환 등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	11	28.20
③ 무응답	0	0
전 체	39	100

는 경우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표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을 결성한 프리랜서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평균적인 기대수준이 조합 간에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 프리랜서협동조합 운영상의 애로요인과 조합원들의 일 수행 방식

그리고 프리랜서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6.4%가 일감 및 프로젝트 확보 미흡을 1순위로 들었고, 2순위로는 조합원의 참여 부족과 경영전문가를 고용할 지불능력의 미흡, 그리고 3순위로는 조합원 수의 부족을 가장 많이 들었다(표 7 참조). 즉, 일감 및 프로젝트를 충분히 확보할 정도의 조합원 간의 협력 수준 및 경영전문가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전문가를 확보할 만한 정도의 규모의 경제, 즉 조합원 수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임에도 아직 조합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7〉 조합 사업 추진에서 겪는 애로사항

(단위: 개, %)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1) 조합원 참여 부족(출자금 납입, 조합 운영, 타 조합원과의 정보 공유에의 참여 등)	조합	6	12	9
	비율	15.4	30.8	23.1
(2) 일감 및 프로젝트 확보 미흡	조합	22	4	3
	비율	56.4	10.3	7.6
(3) 경영전문가를 고용할 지불능력의 미흡	조합	3	10	5
	비율	7.6	25.6	12.9
(4) 일의 배분 및 이익/손실 배분 등 조합운영을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	조합	1	6	3
	비율	2.6	15.4	7.6
(5) 조합의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할 조합원수의 부족	조합	4	4	12
	비율	10.3	10.3	30.8
무응답	조합	3	3	7
	비율	7.6	7.6	17.9
전 체	조합	39	39	39
	비율	100.0	100.0	100.0

다음으로 프리랜서협동조합들의 사회적 목적 실현(예를 들면,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능기부 등의 활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69%는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전체 23%는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8 참조). 대부분의 프리랜서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지 않은 일반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에 관심이 높다는 점은 사회적·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8〉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실천에 대한 조합의 관심 정도

	조합(개)	비율(%)
① 아직은 별로 관심이 없다	1	2.56
② 약간 관심이 있다	2	5.12
③ 관심이 있는 편이다	9	23.07
④ 관심이 높은 편이다	18	46.15
⑤ 관심도 높고 적극 실천하고 있다	9	23.07
⑥ 무응답	0	0
전 체	39	100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직운영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언급할 부분은 조합원이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즉, 번역 일이나 강사 일처럼 프리랜서조합원이 각자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건축 일처럼 프리랜서조합원들이 팀을 이루어 협업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다. 우미숙과 장종익(2018)은 전자의 경우는 플랫폼 사업형에 가깝고 후자의 경우는 협업사업형에 가깝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일의 방식 차이가 협동의 이익 창출의 원천 및 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조직운영모델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이 점은 다음 절에서 다룰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IV.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과 정책적 함의

1.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을 통하여 프리랜서 일을 할 경우가 시장거래를 통하여 일을 할 경우에 비하여 순편익이 커져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순편익은 협동의 이익과 협동조합의 운영에 따른 비용 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Hansmann, 1996). 협동의 이익 창출 원천은 주로 프리랜서 조합원이 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종류, 조합의 역량(capacity), 그리고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만족이라고 하는 비금전적인 편익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후자는 주로 은퇴자 등 시간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프리랜서들이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통하여 감축할 수 있는 시장거래에 따른 비용은 조합원이 서로 일하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축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조합원들이 팀을 결성하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장거래를 통하여 협업을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종류는 처음 만나서 같이 일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불신 문제, 무임승차자 문제 혹은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에 공동 소유자로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에 불신문제나 조정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 즉, 적정 수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지닌 조합원 간의 시너지 효과가 협동의 이익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협업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표 3>에서 서술한 노동자협동조합과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예술인이나 번역자 등 혼자서 일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수주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협동의 이익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협동의 이익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애로요인과 목표, 그리고 프리랜서협동조합 조합원 간의 일하는 방식에 따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조건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유형별 지속가능 조건

프리랜서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 협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간에 일하는 방식	전업적 프리랜서의 소득증진	은퇴자 등의 경우 소득보다는 일을 통한 기쁨과 보람, 경단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조화 추구
조합원 각자 단독으로 일을 수행	i) 규모의 경제 달성 과제	ii) 규모의 경제 달성 과제 및 교류의 즐 거움 실현 과제
조합원 간 협업 방식으로 일 을 수행	iii) 협업 규칙의 정착과 조직의 복제를 통한 확산과 연합회 설립 과제	iv) 협업 규칙의 정착과 교류의 즐거움 실현 과제

이렇게 프리랜서조합원의 필요라고 하는 요소와 협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간에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요소 등 두 가지 요소로 행렬표를 만들어 보면,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직유형은 i) 단독으로 일하는 전업적 프리랜서의 소득증진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 ii) 협업 방식으로 일하는 전업적 프리랜서의 협동조합, iii) 단독으로 일하는 부업적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 iv) 협업 방식으로

일하는 부업적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 설립된 프리랜서협동조합 중에서 i)과 ii)의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형은 국내외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결과, 플랫폼 방식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iii)과 iv)의 유형은 협업형으로 소규모 협동조합의 복제를 통한 확산과 이러한 소규모 협동조합들의 연합회 결성 등을 통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직 발전을 위한 과제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조합원 수의 증대와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표 10>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합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 사업 및 서비스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 조합 설립 후 대부분의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프로젝트 계약서 작성 및 대금결제 등에 관한 행정처리를 개별 조합원이 아닌 조합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공신력과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유리성을 잘 발휘하고 조합원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높은 평판을 구축하게 되면 신규 조합원들의 가입이 늘게 되어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회비,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 일부 클라이언트의 대금결제 지연 사태에 대처할 수 있게

<표 10>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단계별 사업 범위와 수준

단계(예시)	실현 가능한 사업의 종류(예시)
1단계	조합은 프로젝트의 계약서 작성/이행/납품/대금결제 등에 관한 행정 처리대행(개인에 비하여 높은 공신력의 활용 및 높은 협상력 발휘)
2단계	조합 차원에서 자금의 풀링(pooling)을 통하여 대금결제 지연 발생 시 조합원에 대한 선지급
3단계	프로젝트 시장 정보 수집,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지원
4단계	잉여금의 활용: 공동작업 공간 마련,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된다. 실제로 플랫폼형 협동조합으로 크게 성공한 벨기에 스마트(SMart)라고 하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은 8만 명에 달하는 조합 사업이용자 수 때문에 조합원의 프로젝트 결과 납품 후 일주일 내 대금 지급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전병유 외, 2017).

다음으로 조합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진출 혹은 강화하고자 하거나 조합원 그룹이 요구하는 경우에 조합의 실무역량과 조합원들의 역량을 결합하여 해당 분야 프로젝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공동 작성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조합의 평판은 해당 분야에서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우수한 프리랜서들의 가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프리랜서조합원들의 협동의 이익의 일부를 유보하여 축적된 자금을 통하여 조합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영역에의 공동 프로젝트를 개척하는 데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협동조합의 가치가 연대(solidarity)인데 스마트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 스마트 협동조합에서는 일정한 수의 조합원 규모에 도달하면서 전업적이고 수입규모가 큰 프리랜서조합원으로부터 큰 규모의 수수료를 받아서 부업적이거나 초보적인 프리랜서조합원으로부터는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도 4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모든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 사이에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전병유 외, 2017).

나. 협업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직 발전을 위한 과제

한옥건축협동조합 등과 같이 일의 특성상 프리랜서조합원들이 주로 공동으로 일하는 경우 협동의 이익 창출의 원천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개별 조합 내에서 조합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합 간 협력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협업형 프리랜서협동조합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합원 간에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유 노동 혹은 소유 인센티브를 발휘시켜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제도와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합원의 공동 참여결정사항에 있어서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체적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한 업무 몰입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문화의 증진을 통하여 동료와 함께 일하는 재미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적절한 제도와 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업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소규모 적정 조합원 수 보유의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복제를 통한 확산과 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컨소시엄,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등의 설립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발전 과정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2. 정책적 함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그 유형에 관계 없이 개별 프리랜서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애로요인 중 프로젝트의 수주 확보와 관련된 애로요인, 일 양의 변동성, 개인으로서의 협상력의 불리함 등을 다수의 프리랜서들의 협업과 법인격의 설립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고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노동공급자 맞춤형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의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경제적 보완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도 일치하며, 미국의 *freelancer union* 처럼 부차적으로 동일업종의 프리랜서들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단절화 축소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그동안 프리랜서 일의 시장이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용역 수주경쟁이 이루어지고 용역 알선업체나 개인에 의한 중간 마진 수취라고 하는 사회적 낭비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개방적인 직업적 네트워크에 의한 용역 수주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

고 가치창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을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직원)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요한 일반협동조합의 한 세부 유형으로 설정하여 프리랜서들의 경제적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조직으로 인정하고 이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협동조합을 독자적인 유형으로 설정하여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시에 이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협동조합에서 차지하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중이 20%가 넘는다는 점에서 이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당할 부서를 고용노동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리랜서들이 주로 일부 자발적인 전업적 프리랜서들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조기은퇴자, 기업의 아웃소싱에 따른 장기실업자 등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판단된다.⁷⁾

마지막으로 정부가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재 설립된 우리나라의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어서 조합원의 조합으로의 결집도가 낮은 편이고 조합 간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수의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네트워크 구축, 협업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연합회 혹은 소셜프랜차이즈 구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합원 리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합원의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조합에 기여할 마음이 낮은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 초창기에 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초창기 협동조합의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리랜서가 아닌 사회운동가 혹은 혁신가가 협동조합 조직형태가 아닌 비영리조직 형태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일정하게 비즈니스가 마련된 이

7) 최근 영국의 Cooperative UK가 시도하고 있는 프리랜서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프리랜서협동조합 조직화 시도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Conaty et al., 2018).

후에 이용자 프리랜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앞에서 언급한 벨기에의 스마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협동조합으로 출범한 한국의 경우에 정부가 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 지원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수립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공공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프리랜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프리랜서협동조합 대표자들이 가장 필요로 느끼는 교육프로그램은 일감 및 프로젝트 확보에 기여하는 해당 업종에 관한 문제점 분석 및 전문적인 각종 프로그램으로 1순위에서 49%를 차지하였고, 2순위에서는 유사한 조합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화 프로그램이 44%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해온 협동조합 가치 및 정신 교육, 회계 및 사무처리방법에 관한 교육 등은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프리랜서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개, %)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1) 조합 내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조합원 간의 협동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각종 프로그램	조합	6	5	7
	비율	15.4	12.8	17.9
(2) 일감 및 프로젝트 확보에 기여하는 해당 업종에 관한 문제점 분석 및 전문적인 각종 프로그램	조합	19	7	4
	비율	48.7	17.9	10.3
(3) 조합의 회계 및 사무처리방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조합	5	5	5
	비율	12.8	12.8	12.8
(4) 협동조합의 가치 및 정신 고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조합	4	5	12
	비율	10.3	12.8	30.8
(5) 유사한 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화 프로그램	조합	3	17	8
	비율	7.7	43.6	20.5
(6) 무응답	조합	2	0	3
전 체	조합	39	39	36
	비율	100.0	100.0	100.0

V. 맺음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목적 및 지속가능 조건을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신설 협동조합 중에서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은 약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등장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이 사회적 후생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호성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에서 지속가능해야 한다. 최근에 설립되기 시작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은 아직 복제 가능한 정도로 성공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과 조직운영모델을 시행착오를 통하여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조합과의 계약이 임노동계약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이라는 점에서 사업자협동조합과 유사하고 조합원의 일이 조합원 사업장이 아니라 조합을 통하여 확보된다는 점에서 노동자협동조합과 유사하다. 그러한 점에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의 혼합 조직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협동조합에 관한 개념을 토대로 서울시에 소재한 프리랜서협동조합 39곳의 이사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응답 중에서 자발적인 전문 프리랜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경력단절여성이나 은퇴자, 마을 활동가 혹은 마을주민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때, 이러한 프리랜서조합원의 전업성 여부와 자발적 선택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안정성과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기대와 열망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한 지배적인 이유는 시장에서의 불공정성 여부라기보다는 프리랜서들이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움, 즉 높은 거래비용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공모 제안서 작성 등에서의 어려움, 계약서의 작성·공

모 절차 및 이행, 납품 및 대금결제 등에서 단체나 기업에 비하여 공신력이 낮아서 겪는 어려움, 그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일감 수주의 불안정성 및 변동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조사결과, 대부분의 프리랜서협동조합들은 일감 및 프로젝트를 충분히 확보할 정도로 조합원 간의 협력 수준 및 경영전문가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전문가를 확보할 만한 정도의 규모의 경제, 즉 조합원 수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을 통하여 감축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은 조합원이 서로 일하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프리랜서들이 일하는 방식은 번역 일이나 강사 일처럼 프리랜서 조합원이 각자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건축 일처럼 프리랜서조합원들이 팀을 이루어 협업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와 같은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할 경우에 플랫폼 사업형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는 협업사업형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플랫폼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조합원 수의 증대와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조합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 사업 및 서비스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 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 한옥건축협동조합 등과 같이 일의 특성상 프리랜서조합원들이 주로 공동으로 일하는 경우 협동의 이익 창출의 원천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개별 조합 내에서 조합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합 간 협력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프리랜서협동조합이 고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노동공급자 맞춤형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의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경제적 보완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고, 특히 프리랜서들이 주로 일부 자발적인 전업적 프리랜서들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조기은퇴자, 기업의 아웃소싱에 따른 장기실업자 등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프리랜서들이 전통적인 임노동자와는 달리 경제주체로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협동조합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면 프리랜서 일자리 질의 향상 및 지원인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실업 관련 정부 복지 부담을 줄이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리랜서협동조합의 규모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의 제공 등 정부가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적인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직접 생산한 데이터의 표본 크기가 적고 플랫폼형 비즈니스모델과 협업형 비즈니스모델 등 유형별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본 논문이 제시한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등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설문조사의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프리랜서협동조합에 대한 후속 연구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기선(2016).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노동정책연구』 16(4): 1~36.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2018. 6). 「서울시 프리랜서 거래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우미숙·장종익(2018).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유형별 특성」. 『한국협동조합연구』 36(1): 1~19.
- 이승렬·김삼수·황준욱·박명준·신현구(2013).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장종익(2010).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현단계와 과제」. 『농업경제연구』 51(3): 93~133.
- _____(2014). 『협동조합 비즈니스전략: 개념, 비즈니스모델, 사례』. 동하.

- _____(2017).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협동조합연구』 35 (2) : 81~101.
- _____(2018). 「협동조합기본법 현황과 개선방안」.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동편집. 『사회적경제법연구』 경인문화사, pp.174~217.
- 장종익 · 정화령 · 황세원(2015).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유형 및 사업모델에 관
한 사례연구』.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장종익 · 정화령(2017). 『2017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 활
성화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전병유 · 장종익(2017). 『사업고용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 황준욱 · 권현지 · 김영미 · 박제성 · 남재량(2009). 『프리랜서 고용관계 연구: 영
화산업과 IT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Bijman, J. et al.(2012). *Support for farmers' cooperatives*. Wageningen UR.
- Birchall, J.(2011). *People-centred Businesses: Cooperatives, Mutuals and the Idea
of Membership*.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an.
- Conaty, P., A. Bird, and C. Ross(2018). “Working Together: Trade Union and
Co-operative Innovations for Precarious Workers, 2018.” Cooperative UK.
- Cook, M. L.(2012). “One Hundred Years of Academic Output in Peer Reviewed
Journals: The Evolution of Cooperative Research and the Way Ahead.”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operative
Responses to Global Challenges.”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pp.21~23.
- Fraser, J. and M. Gold(2001). ““Portfolio Workers’: Autonomy and Control
Amongst Freelance Translators’ Work.” *Employment & Society* 15 (4) : 679
~697.
- Hansmann, H.(1996). *The Ownership of Enterpris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Jang, J.(2017). “The Emergence of Freelancer Cooperatives in South Korea.”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88 (1) : 75~89.

- Jenkins, K.(2017). “Exploring the UK Freelance Workforce in 2016.” IPSE Resources, IPSE.
- Katz, L. F. and A. B. Krueger(2016). “The Rise and Natur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in the United States, 1995~2015.” NBER Working Paper No. 22667.
- Kitching, J. and D. Smallbone(2012). “Are Freelancers a Neglected Form of Small Busi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9 (1) : 74~91.
- Kunda, G., S. Barley, and J. Evans(2002). “Why Do Contractors Contract? The Experience of Highly Skilled Technical Professionals in a Contingent Labor Marke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5 (2) : 234~261.
- Muehlberger, U.(2007). “Hierarchical Forms of Outsourcing and the Creation of Dependency.” *Organization Studies* 28 (5) : 709~727.
- Nilsson, J.(1999). “Cooperative Organisational Models as Reflections of the Business Environments.” *The Finish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48 (4) : 449~470.
- Rainbird, H.(1991). “The Self-employed : Small Entrepreneurs or Disguised Wage Labourers?” In A. Pollert, ed. *Farewell to Flexibility*. Blackwell : Oxford, pp.200~214.
- Sexton, R. J., and J. Iskow(1992). “The Competitive Role of Cooperatives in Market-Oriented Economies : A Policy Analysis.” Paper presented at Cooperatives in Agriculture: International Comparisons Symposium. Jerusalem, Israel.
- Smeaton, D.(2003). “Self-Employed Workers: Calling the Shots or Hesitant Independents? A Consideration of the Trends.” *Work, Employment & Society* 17 (2) : 379~391.
- Zamagni, V.(2012). “Interpreting the roles and economic importance of cooperative enterprises in a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1 (1) : 21~36.

An Analysis of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s as an Economic Organization for Freelancer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Jang Jongick

This research examines freelancer cooperatives that have recently emerged based on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reasons why freelancers have established a cooperative and what conditions are required for freelancer cooperatives to thrive. A preliminary result of our research shows that freelancer cooperatives have emerged in order to reduce transaction costs that freelancers would have when they organized freelance work through markets. A sustainable business model and an organizational model are necessary for freelancer cooperatives to contribute to enhancing social welfare. This paper offers necessary conditions for freelancer cooperatives by categorizing them into two types such as platform type and team-production type. It also points out tha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eeds to embrace freelancers into their policy agendas and plays an appropriate role for helping the sustainability of freelancer cooperatives in their early stage.

Keywords : freelancer, cooperatives, economic sustainability, organization of work